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문화학과 내부규정

제정 2020. 03. 0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일반대학원 미디어문화학과 학사행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
- 제2조 (수업연한) ①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각 2년으로 한다.
 - ② 수업연한이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 기간을 말한다.
 - ③ 제1,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변경할 경우 학과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3조 (재학연한) ①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 기간을 말한다.
 -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 연한은 3년,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을 기본으로 한다.
 - ③ 재학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장 휴학·복학·자퇴 및 제적

제1절 휴학

- 제4조(휴학)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휴학은 통산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임신, 출산, 육아 : 병.의원의 진단서
 - 2. 질병으로 인한 휴학 : 병.의원의 진단서
 - 3. 군입대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휴학 : 입영통지서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③ 기타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을 따르며, 규정되지 않은 예외적 사항의 경우는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- 제4조의2 (직권휴학) ① 정신 질환, 건강상 이유 등 기타 특수한 이유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에게 1차적으로 대학원장 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병원 치료, 학생생활 상담연구소에서의 지속적 상담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, 기피하거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본조와 같은 직권 휴학자의 휴학 연한에 대하여 학칙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제2절 복학

제5조(복학) 복학은 군산대학교 대학원 학사행정 시행 세칙을 따른다.

제3절 자퇴 및 제적

제6조(자퇴 및 제적)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.

- 1. 제3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.
- 2. 제5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.
- 3.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.
- 4. 전 과목의 총 성적평균이 해당 기준에 미달인 자.

제4장 학점이수 및 학업성적

- **제7조(취득학점 제한)** 학생이 1인의 교원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은 9학점이내, 박사과정생은 15학점 이내로 한다.
- 제8조(타 학과 교과목 이수) 타 학과(부·전공) 및 교내 타 대학원 학과(부·전공)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지도교수와 학과장에게 교과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9조 (수업출석)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- 제10조 (학점취득) 학점은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총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. 제11조 (재이수)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일부를 재이수 할 수 있다.

제5장 선수과목

- 제12조(선수과목) ① 석·박사과정의 학과(부) 및 전공이 학·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(부) 및 전공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학과(부·전공) 전공 교과목 중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대학원 석·박사과정 지원전공 상이자의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박사과정 지원전공 상이자의 경우 학과장이 학과(부·전공) 및 대학원의 학과(부·전공)의 전공 교과목 중 6학점 이내에서 추가로 이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장 자격시험

제13조(외국어시험) ① 외국어시험은 군산대학교 학위수여규정을 따른다.

- ② 다만,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 연수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지도교수가 수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합시험 이전에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, 석사 60점 박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- 제14조(종합시험) ① 석사과정은 3과목, 박사과정은 4과목을 실시한다.
 - ② 각 과목의 담당교수 중 1인의 교원으로부터 선택하는 과목은 최대 2과목을 넘지 못한다.
 - ③ 자격시험은 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일정을 따른다.

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

- 제15조(논문제출 자격) ① 석.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 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 - ②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. (등재지 이상 학술지는 학교의 승진규정에 준한다.)
- 제16조(논문작성계획서 제출) 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기 종료전까지 지도교수를 거쳐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논문 주제 공개발표를 수료학기 종료전 진행해야 하며 공개발표를 행한 당학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- 제17조(논문 제출시기) 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5월초와 11월초로 한다.
- 제18조(논문발표 및 심사) ① 논문제출자는 학과(부)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구술(공개발표)심사를 받아 야 한다.
 - ② 석사학위과정은 2회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3회 이상으로 한다.

제8장 학위수여와 취소

제19조(학위수여 취소)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학과에서 대학원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